

典籍의 管理 運營 小考

任 鍾 淳*

《차 리》

- | | |
|--------------------|----------------------|
| 一. 序 論 | V. 版種에 의한 劃定問題 |
| 二. 옛책의 慣用名稱 및 區分限界 | 三. 典籍의 整理, 保存 및 利用問題 |
| I. 慣用名稱問題 | I. 分類問題 |
| II. 典籍 下限時期 劃定問題 | II. 目錄作成問題 |
| III. 文字上 劃定問題 | III. 書架配列 및 利用問題 |
| IV. 裝幀에 의한 劃定問題 | 四. 結 論 |

一. 序 論

우리는 유구한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고유의 民族文化를 享有하고 있다. 문화의 발전이 오래일수록 崇古思想은 더욱 강해지며 그의 유산인 전통문화는 여러 형태로 후손들에게 계승되어 溫古知新의 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바이다. 국민들의 정신자세 확립의 배경이 되는 民族意識의 수립과 옛시대의 文物制度를 考察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옛 조상들의 정신적 유산이 현물화된 자료인 것이며 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典籍은 가장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이들 典籍은 民族精神의 실체인 國學發展의 原動力이 되며, 새로운 民族文化의 結實을 맺을 것이며, 이는 永遠無窮하게 文化面의 基本資料로서 중요성을 차지함은 물론이다.

현재 典籍所藏의 분포를 살펴 보면 個人所藏과 圖書館所藏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개인이 所藏하고 있는 典籍 중 그의 管理가 良好한 것도 있으나 個中에는 典籍의 眞價도 評價하지 못한채 아직도 認識不足 또는 管理未備로 重要한 典籍이 散帙, 汚損, 煙滅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數量의 典籍이 國·公·私立의 圖書館에 所藏되어 保存 利用되고 있어 그나마 國學發展에 이바지하고 있음은 기쁜 일이다. 하루속히 모든 典籍이 圖書館 계통에 수집, 정리, 보존되어 國學研究者 및 일반에게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司書課長

그러면 과연 典籍이란 무엇인가? 어떤 옛 책이 典籍의 範疇에 들 것인가? 하는 區分方法은 典籍 管理上의 問題이다. 이에 名稱使用에도 若干의 論難은 있겠으나 특히 큰 것은 時代的區分이다. 즉 어느 時代를 下限線으로 하여 그 以前의 것을 옛 책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것이다. 이는 圖書館의 資料整理 立場에서 즉 어느 것은 新書로 編入할 것이며 또 어느 것은 옛 책으로 정리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치 않고 매우 복잡하고도 애매한 결정 문제이며 그의 限界線을 劃定한다는 것은 매우 困難之事인 것이다. 또하나 裝幀形態로 新書와 옛 책(典籍)을 어떻게 區分하느냐 하는 것도 그 도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管理上의 문제이며 이는 도서의 書架配列까지 隘路를 가져오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中國이나 日本에서도 당면하는 같은 문제인 것이다.

二. 옛책의 慣用名稱 및 區分限界

Ⅰ. 慣用名稱問題

중요한 옛날 책에 대한 名稱으로 현재 여러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가) 漢書 王莽傳上의 「徵天下通一術 教授十一人以上 及有逸禮古書毛詩周官爾雅天下圖讖 鍾律月令法史篇文字 通知其意者」에도 있듯이 옛 文書, 옛 書籍이란 意味를 가진 古書란 名稱의 使用

나) 後漢書 太雄傳의 「孝明皇帝始有 撲罰 皆非古典」, 左傳 注의 「以從古典」에 있듯이 옛 法度, 制度, 古憲 및 옛날의 서적으로 후세에 남을 가치가 있는 책 또는 古代의 經書를 뜻하는 古典이란 名稱의 使用

다) 左氏 昭十五의 「昔而高祖孫伯璆 司晉之典籍 以爲大政 故曰籍氏」와 孟子의 「不足以守 宗廟之典籍」에도 있듯이 옛 중요한 서적을 뜻하는 것으로 典籍이란 名稱의 使用

라) 魏志·程昱傳의 「遠覽典志 近觀奏漢」에도 있듯이 典志란 名稱의 使用

마) 宋書·曆書의 「遠考唐典 近徵漢籍」에도 있듯이 漢代의 서적 또는 中國의 서적, 漢文으로 쓰여 있는 서적을 뜻하는 것으로 漢籍이란 名稱 등을 使用하고 있다.⁽¹⁾

이들 名稱을 使用한 目錄으로 가)에 該當하는 것으로는 東國大學校中央圖書館刊 「古書目錄集成」 國立中央圖書館刊 「古書目錄」 등이며, 다)에 該當하는 것으로는 國學資料保存會刊 「韓國典籍綜合目錄」 마)에 該當하는 것으로 建國大學校中央圖書館刊 「漢籍目錄」, 桂五十郎編 「漢籍解題」, 東洋文庫刊 「東洋文庫漢籍藏書分類目錄」, 尊經閣刊 「尊經閣文庫漢籍目錄」 등등이 있다.

以上の 名稱 使用外로 韓國書籍에 관한 것으로는 東洋文庫의 「朝鮮本」 奎章閣의 「奎章閣圖書目錄韓國本史部」 藏書閣의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古鮮冊譜에서의 「韓籍」 하바드大

(1) 李家源, 張三植編의 詳解漢字大典과 諸橋轍次編의 大漢和辭典

學燕京圖書館의 「韓籍簡目」 등이 있다. 中國書籍에 관해서는 東海大學圖書館의 「中文古籍簡明目錄」, 長澤規矩也의 「支那書籍解題」 등이 있으며, 日本書籍에 관한 것으로는 佐村八郎의 「國書解題」 등 여러 名稱을 使用하고 있다. 이 以外로 「朝鮮圖書解題」 「古籍」 「古本」 등의 名稱을 使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옛 책 또는 漢字專用 및 併用하고 있는 韓國, 中國, 日本 三個國의 옛 책의 書冊目錄에 使用하는 名稱이 여러가지로 使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 典籍下限時期劃定問題

모든 옛 책의 내용, 형태, 출판년 등을 어느 기준하에 어느 것을 典籍으로 決定할 것인가에는 여러 問題가 있다. 즉 어느 時期를 劃定하여 그 以前의 것을 옛 중요한 서적으로 判定하여 도서관의 여러 형태별 자료 중에서 구분 정리 보관 열람시킬 것인가. 이 時期的 구분이란 點은 時期的 以外의 다른 要件과 結付하여 볼 때 상당히 모호할 수 있으며 그 시기선을 劃定하기란 참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어느 선을 劃定하여 그 原則에 따라 정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지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時期的 劃線에서 文化財管理局의 動產文化財規定은 1910년을, 서울大學校도서관은 1909년을⁽²⁾ 下限線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할 것은 어느 時期를 劃定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의 내용 저작년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刊年을 기준하였는지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그 책을 저술한 저자의 生沒年과 관련해서 저작연대도 생각할 문제점이다.

가) 내용 저작년의 경우

이는 刊年에 關係없이 그에 收錄된 內容의 時期에 의해 區分하는 方法이다. 즉 그 저술된 內容의 시기를 기준으로 下限線을 두려는 方法이다. 이런 경우 다음에 論할 裝幀에 저촉되는 경우를 빼고는 대개 개인문집과 몇개의 주제 도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 즉 經書에 흔히 있는 周易, 中庸, 孟子, 大學 등이 그 내용이 옛 것이라 하더라도 近年에 出版된 것은 例外일 수 있으며 또한 近代의 學者들이 이것에 대한 研究論文을 발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내용저작으로 본 典籍형태로 확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時代的 下限線을 劃定한다는 點을 고려할 때 劃定된 時代的 下限線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原稿가 그 前에 作成된 文集 등이 다만 刊行 時期가 下限線에 해당 되지 않는다 고 이를 典籍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나) 刊年 기준 下限線 劃定方法

옛 책을 典籍, 古書 또는 古典 등 여하한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의 刊年 下限線은 國內 서적의 경우 1910년 또는 1909년을, 國外的 것으로 中國 서적은 清代末(1911), 日本서적은 明治以前(1867) 또는 明治末期(1911)로 劃定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여기서 國外的 서적은

(2)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 일사·가람문고 古書著者目錄 凡例

論外로 하고 國內의 서적만을 대상으로 論한다면 이 下限線은 옛 책이 內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하여 절대적일 수는 없다. 즉 이는 하나의 方法일 뿐 그 限界를 劃定한다는 것은 실지로 여러 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것이다.

첫째로 下限線에서 옛 시기를 上廻하고 있는 古刊本 등이 典籍으로 取扱된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 原本 外로 그 後世에 필요에 의하여 覆刻本 또는 重刊本 등으로 刊行된 것도 있다. 이 경우 복각본 또는 중간본의 간행시기가 典籍으로 확정된 下限線 이후인 경우 이의 典籍編入문제가 생기게 된다. 즉 典籍으로 취급할 것인지 혹은 제외하여 일반 동서로 취급할 것인가 裝幀에 대해서는 論外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경우 初刊本을 근거로 下限線 이후의 重刊本이라도 이를 典籍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영인본 등은 제외)

둘째로 上記 覆刻本이나 重刊本과 비슷하나 그 취급에 있어 좀 다른 것이 있다. 즉 근대에 와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후세인들에게 보급시키며, 옛 조상들의 문화업적을 인식시켜 우리의 민족의식을 재확인 및 우리의 國學振興에 기여하고자 각종 典籍의 影印本이 刊行되고 있다. 즉

月印釋譜 卷 7~10, 17, 18. 延禧大學校東方學研究所, 1956—1957.

鄭麟趾, 高麗史. 延禧大學校東方學研究所, 1955.

時用鄉樂譜. 延禧大學校東方學研究所, 1954.

韓漢清文鑑. 延禧大學校東方學研究所, 1956.

申光洙, 崇文聯芳集. 서울, 探究堂, 1975.

尹極, 明齋先生遺稿. 서울, 景仁文化社, 1973.

金訴, 顏樂堂集. 서울, 建國大學校出版部, 1974.

李德懋, 靑莊館全書. 서울大學校古典刊行會, 1966.

金萬重, 西浦集, 西浦漫筆. 서울, 通文館, 1971.

金堉, 潛谷遺稿.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4.

許薰, 舫山全集. 서울大學校圖書館, 1974.

月印釋譜, 卷 1, 2. 西江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1972 등 이밖에도 수 많은 각종의 典籍(影印本)이 刊行되었다. 이들의 내용은 原本과 같으므로 典籍으로 取扱될 수도 있으나 刊年 즉 影印刊行年은 典籍으로 劃定된 下限線 이후의 것으로서 後述의 裝幀 및 奉仕方法에서도 記述하겠으나 이 영인본 자체가 典籍으로 管理된다 인된다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세째로 책을 간행하는데 현대와 같이 발달된 인쇄방식이 없었던 옛시대에는 筆寫로 數部 또는 木板本, 鑄字本, 木活字本 등으로 刊行하였다. 이를 현대의 출판부수와 비교하면 微微한 部數를 발행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坊刻本 또는 文集 및 族譜 등 私家에서 刊行된 것은 그 經費와 物的面에서 부수도 적었지만 刊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조건하에서 原稿은 완성되었지만 그의 刊行이 典籍으로 劃定한 下限時期 이후에 刊行되었다

면 이는 이 범주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간행년만이 그 후이므로 典籍으로 취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바이다.

넷째로 下限時期 이전인 朝鮮末에 西歐의 學問이 漢文으로 번역되어 刊行된 것이 있다⁽³⁾ 이것의 내용은 西歐의이지만 刊行된 곳이 韓國이요 裝幀 또한 韓國固有의 典籍 형태이다. 이것도 역시 典籍으로 같이 취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 著作者의 生沒年을 勘案한 劃定方法

옛 책의 刊年이 下限時期 이후라 하여도 그 도서의 著作者 生沒年代가 下限時期 이전인 것은 典籍으로 取扱되어야 한다. 이는 出刊관계, 기타 여건 또 어느 것은 저자의 沒年이 下限時期 가까이어서 그 당시 즉 下限時期 이전에 刊行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것은 近年에 와서 木板本, 木活字本, 石印本 또는 鉛活字本 등으로 刊行되었다. 이들은 다른 主題에도 있을 것이나 특히 文集類에 많으며 그 一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南師古(1509—1571)

格庵先生逸稿. 石印本. 論山, 以文堂. 1964.

朴啓佑(1749—1794)

義隱遺集. 木活字本. 軍威郡水閣亭, 1926.

朴啓賢(1524—1580)

灌園先生文集. 鉛活字本. 京城, 1927.

朴光輔(1761—1839)

錦西軒先生文集. 木活字本. 慶北達城郡, 1928.

朴在馨(1838—1880)

進溪文集. 木板本. 清道郡萬和亭, 1925.

宋時壽(1613—1689)

歲寒齋遺稿. 石印本. 報恩郡, 1967.

李道顯(1726—1776)

溪村先生文集. 木板本. 奉化郡, 1913

李浩培(1810—1890)

青逸遺稿. 木活字本. 尙州郡, 1938.

Ⅲ. 文字上 劃定問題

흔히 옛 책이라 함에 있어 漢字로 된 서적만을 지칭하기 일수이다. 이는 옛 시대의 通用字가 漢字였으며 옛 책의 거의 모두가 우리 조상들이 漢文으로 저술한 서적 아니면 중국의 서적 등을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옛책에는 이들 漢文으로만 成形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문으로 된 서적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순 한글만으로 된

(3)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上)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p. 3.

옛책 및 국문과 漢文으로 된 저작물 또는 중국서적의 諺解本 등 數多하다. 이들 중 諺解本으로는 增補三略諺解, 經書釋義, 周易諺解, 詩經諺解, 大學諺解, 大學栗谷諺解, 小學諺解, 禮記大文諺讀, 御製女四書諺解, 朱子增損呂氏鄉約, 增修無冤錄諺解, 十九史略諺解, 金剛波羅蜜經諺解, 地藏經諺解, 禪家龜鑑諺解, 武藝圖譜通誌諺解, 杜詩諺解 등등이 있다. 이들은 文字上 漢字만이 아니라란 점에서 典籍에서 제외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이들이 제외되고 漢字만으로 된 中國 및 日本의 옛책이 典籍으로 國內에서 취급된다면 이는 主客顛倒된 현상일 것이다. 물론 中國이나 日本의 옛책도 裝幀, 時期的 劃定方法에 따라 國內 所藏典籍의 一部로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漢字로 된 우리의 옛책과 더불어 下限時期 이전의 한글版도 典籍으로서 活用に 이바지 되어야 한다.

IV. 裝幀에 의한 劃定問題

옛 典籍의 裝幀은 東裝本을 主軸으로 하고 있다. 이에 黃色書衣 즉 黃色表紙에 다 다른 모양을 박아내는 菱花版에 의한 菱花紙에 五針眼訂法으로 製冊한 것이다. 이러한 線裝本 이외로 旋風葉, 蝴蝶裝, 包背裝 등의 裝幀形態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이 후세에 와서 洋裝本으로 影印, 謄寫, 活字 등으로 刊行된 것도 있다. 要는 裝幀에 의한 劃定問題는 同一한 자료이나 原本은 東裝本이고, 후세에 간행한 이런 자료들은 洋裝本이란 점에서 이들을 原本과 同一하게 管理를 하느냐 아니면 따로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典籍과 新書에 다른 分類體系를 사용한 경우와 巨錄의 基本記入(書名記入 또는 著者記入) 등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는 또 巨錄의 배달기준 및 서고관리와 자료 이용 검색에 상당한 長短點이 생길 것이다.

앞에서 말한 時期的 구분이나, 문자상 구분은 그 결과가 문제될 해당 옛 책이 典籍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하나의 요건구성문제이다. 그러나 裝幀에서의 문제는 같은 내용의 책을 一個所로 集合하느냐 二個所로 分離 所藏하느냐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도서관은 두가지 중 하나를 택하고 있다. 이는 典籍을 利用 爲主나 保管 爲主로 할 것이냐 또는 이용과 보존을 겸한 절충식을 택할 것인가 하는데 도서관 경영면으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문제이다.

V. 版種에 의한 劃定問題

옛 책의 인쇄방식에 대해 대개 鑄字本과 木版本으로 간행됐을 것으로 생각하나 이밖에 木活字本 또는 筆寫本으로 된 것도 있다. 따라서 이런 版種에 의하여 典籍으로의 취급방법도 생각될 수 있다. 즉 이들 版種은 典籍으로 編入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時期的 下限線을 고집한다면 이 下限線 이후 木版本, 木活字本 등의 版種으로 간행된 책의 典籍으로의 管理가 애매해질 것이다. 즉 이들은 文字, 裝幀, 冊紙, 版種 등에 있어 下限時期 이전의 典籍과 동일하나 이것이 時期的 下限線 이후에 간행된 때문에 典籍

에서 제외되는 취급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목록상으로 그의 一部分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具容書, 扶風七老會錄. 木活字本. 1948.

寶城鄉校司馬齋先生案. 木活字本. 1919.

徐德潤, 性理述集. 木活字本. 1923.

宋秉珣, 學問三要. 木板本. 1927.

柳致明, 理氣彙編. 木板本. 1925.

丁 橫, 壯行通考. 木活字本. 1941.

이상 예로 든 것은 木板 또는 木活字本으로 간행된 것이나 시대적으로 1910年 이후이므로 만약 典籍劃定期를 1910年으로 한다면 이에서 제외되게 될 처지에 직면할 것이다.

三. 典籍의 整理, 保存 및 利用問題

現下 典籍資料所藏數는 국내 所藏으로 國立中央圖書館에 17만권, 奎章閣에 16만권, 藏書閣에 8만권, 延世大學校中央圖書館에 7만권 등등과⁽⁴⁾ 그의 각 圖書館에 많은 수량을 所藏하고 있으며 이밖에 個人所藏分 및 國外分까지 합하면 전체로 422,700部 1,669,300권⁽⁵⁾에 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양의 典籍 중 個人所藏分을 제외한 기타 분은 대개 공공기관의 도서관에 所藏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관리함에 있어서는 그의 보존에 세심한 주의와 이용에 대한 자료의 조직이 잘 짜여 있어야 한다. 이에는 분류, 목록, 배열과 전적자료의 이용에 대해 各論이 있으며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

I. 分類問題

典籍資料의 주제별 집합수단으로의 분류방법에는 七分法, 四分法, 四分改修法, 獨自的展開法, 十進法 등으로 大別할 수 있으며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四分法, 獨自的展開法 및 十進法을 사용하고 있다. 분류기호를 사용하는 분류방식은 모든 자료가 서가에 배열까지 관련된 것이므로 이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분류방법에 있어 하나의 주제만(예: 음악도서관)을 所藏하는 도서관 또는 한 종류의 자료만(예: 필름도서관 등)을 所藏하고 관리 운영하는 도서관은 그 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적합한 분류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주제 전반에 걸친 각종 자료를 所藏하는 종합도서관에서의 분류방식은 고려하여 볼 문제이다. 이는 新書로서의 東洋書, 西洋書 등과 각종의 特殊資料 및 典籍資料 등을 어떻게 분류하여 보존 이용시킬 것인가에 관련되기

(4) 민족문화, 창간호, 민족문화추진회, 1975. pp. 65-79.

(5) 金田培 “動產文化財登錄과 典籍文化財保護” 도협월보 제13권제5호 (1972년 5월호) p. 13.

때문이다. 즉 최소한 新書, 特殊資料 및 典籍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분류법을 택할 것인지 또는 자료에 따라서는 약간의 不合理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성을 내포하겠지만 자료의 전체적 單一化的 관리를 위해 하나의 분류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典籍에 대한 분류방법으로 典籍自體의 特性을 勘案하여 四分法 혹은 獨自的 展開法을 사용한 圖書館도 있으며, 또는 도서관의 所藏자료 전체의 一元的 운영을 위해 新書分類法 즉 十進法을 채택 사용하는 도서관도 있다. 이러한 분류문제는 서고에 자료의 배열문제는 且置하고라도 典籍에 獨自的 分類法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한 도서관에서 두가지 분류법을 사용할 경우 目錄編成에서 著者目錄, 書名目錄에는 아무 문제점이 없으나 分類目錄에서는 문제점이 생긴다. 즉 그 도서관의 목록편성이 辭典體目錄이 아닌 경우에서 分類目錄은 新書의 分類目錄과는 배열상 混合配列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必然的으로 二元的 分類目錄이 편성될 것이다. 이 경우 그 도서관의 所藏資料를 利用하는 者가 같은 主題의 新書와 典籍을 검색할 경우 두가지의 분류체계를 알아야 하며, 두곳의 분류목록을 검색해야 할 불편과 시간적 낭비를 가져올 것이다. 서고 내의 자료 배열은 운영상의 묘미를 살려서 주제별로 또는 자료별로 구분시킬 수 있으나 목록에서의 자료검색은 한곳에서 검색함이 빠르고 편한 것이다. 이런편을 감안하여 종합도서관으로서의 분류방법은 典籍도 같은 一元的 분류방법을 사용해야 함이 좋을 것이다.

II. 目錄作成問題

典籍에 대한 목록작성에 있어서 기입형식 및 기본기입 등은 新書와 같게 채택할 것이다. 이는 종합도서관에 있어서 新書目錄의 검색방식과 같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 외의 記述事項에 있어서는 新書보다 상세히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典籍의 對照事項(版本, 冊卷數, 匡廓, 行數, 字數, 版心事項 등) 및 註記事項(序文記, 跋文記, 刊記, 表紙書名 및 內容) 등을 記入하여 줌으로써 目錄上에서 書誌的 調査에 若干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III. 書架配列 및 利用問題

現在 典籍관리에 있어 單獨配列(保存爲主)과 混合配列(利用爲主)를 擇하는 두가지 方法이 있다.

가) 單獨配列과 그 利用問題

典籍의 보관관리 및 이용상에 있어 新書와 區分하여 별도로 배열하고 이용시키는 것이다. 물론 분류방법과 목록편성은 그 도서관 단일방법으로 모든 자료를 같게 취급하되 서고내의 배열만이 구분되는 것이다. 이 경우 前言에서 問題로 등장한 典籍으로의 區分限界 즉 時期面, 文字面, 裝幀面 등등에서 어느 範疇內的 것을 典籍으로 하여 新書 및 其他 자료와 分離하여 單獨配列하는가를 決定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典籍을 單獨配列할 경우 자료의 정

리과정에서 典籍의 여부를 구분할 때 부여될 자료기호에 의해 배열될은 물론이다.

이 단독배열방법은 典籍資料의 保存을 위주로 택한 방법으로서 典籍資料의 이용방법도 일반도서의 관의대출과는 달리 관내열람 등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일반도서와 같이 개방적 이용방법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 單獨配列의 경우 裝幀面에서의 影印本의 배열이 문제이다. 이를 原本과 같이 典籍에 배열할 것인가 또는 현대 도서로 일반도서에 배열할 것인가이다. 이 문제는 原本 典籍의 保存爲主에 따른 이의 利用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반도서에 배열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 混合配列과 그 利用問題

이는 典籍의 서고배열과 그의 이용방법을 新書와 同一하게 管理하는 方法이다. 즉 모든 도서형태의 자료(특수자료는 제외)를 한군데에 배열하는 것이다. 이 경우 典籍으로서의 管理에 있어 時期面, 文字面 등에 區分 문제도 없을 것이며 특히 裝幀面에서 問題가 되었던 影印本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混合配列 등으로 影印本 등은 原本典籍과 같은 장소에 배열될 것이며 더구나 같은 주제에 관한 현대인의 연구논문과 함께 배열되며 자료검색이 편하며 특히 이용자측으로는 일반도서와 같이 대출이 가능하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混合배열은 이러한 利點이 있는 반면으로 자료의 장정형태에 의한 배열문제와 자료적 가치성과 原本형태의 再現不能이란 점에서 이 혼합배열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첫째로 자료의 배열면에서 보던 縱으로 세워서 배열할 수 있는 洋裝本과 橫으로 누워서 배열하여야만 하는 東裝本과의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적으로 典籍보다 많으며 또 漸増할 洋裝本과 같이 세워서 배열한다면 부득불 포갑 또는 裝幀형태의 변화를 가져올 洋裝제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예산상 막대한 경비지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典籍本 중 唯一本, 稀貴本 등도 존재할 것인데 이들은 混合배열하지 말고 別置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혼합배열은 필연적으로 일반도서와 같이 관리하게 되며 대출도수가 빈번한 일반도서 사이에서 열람빈도가 작은 전적들은 도서 출납에 불편을 줄 때가 많을 것이다. 또한 增加面에 있어 거의 現狀維持狀態에 있는 典籍이 數的으로 增加하여 서가의 배열이동이 필요하게 될 일반 도서와 혼합배열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자료 이동을 하게 되어 原本 자체의 汚損 磨損이나 物的 人的으로 많은 낭비를 가져올 것이다. 어쨌든 혼합배열은 이용위주를 택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과연 典籍으로 편입될 우리나라 原本서적의 複本이 몇 부나 될까. 일반도서와 혼합배열을 하여 관리운영을 할 때 어느 것은 全國的으로 많아야 들 또는 세부, 혹은 唯一本 등 同一本으로 양적으로 근소한 原本典籍이 관리 소홀로 毀損하는 등 國家的 保存面에서 이익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混合配列은 피하되 典籍자료의 有效한 보존과 이용을 위해 單獨配列을 택하고 典籍의 館內閱覽과 더불어 마이크로필름화와 영인본에 의한 刊行을 하여 그 자료의 이용을 전개시켜야 할 것이다.

4. 結 論

우리나라 典籍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 조상의 얼이 깃들인 이들 原本 典籍을 잘 保存하여 길이 後世에 遺傳하는 反面 이들을 有效 適切하게 利用 普及시키어 國學發展을 達成시키는 것이 捷徑之事인 것이다.

I. 典籍의 劃定 限界의 確立

이 問題는 複雜하고 애매하며 時期面, 內容面, 裝幀面 등등에 있어 끊기 어려운 連綿之事이다. 이의 해결책으로 하나는 時期的으로 어떤 선을 그은 그 劃定線에 따르든가 또 하나는 典籍으로의 優位가 認定될 요건이 구비된 것은 時期別劃定을 넘어 典籍으로 取扱하는 것도 한 方途일 것이다.

II. 典籍의 分類

分類는 그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같은 분류방법을 사용함이 좋다. 이는 하나의 도서관에서 분류방법에 一元的 方法을 채택하지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분류목록에 혼합배열을 할 수 있어 같은 주제의 자료 검색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III. 典籍의 保存과 이용

도서관의 궁극적 목적은 자료의 이용에 있는 것임은 不問可知이다. 그러나 稀貴자료에 따라서는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典籍의 原本은 그 數에 있어 한번 毀損되면 다시 찾기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 典籍의 保存에 힘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의 하나로 典籍만의 單獨배열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 保存爲主에만 치우치고 利用에 대해서는 등한한 것 같을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典籍原本의 館內閱覽은 물론 시행하되 중요 전적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작성하여 이용시키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은 도서관적 이용방법이고 끝을 맺음에 있어 이러한 典籍에 대한 汎國家的인 影印事業을 展開해야 할 것이며, 國譯에 의한 간행도 해야 될 것이다. 이는 典籍의 保存과 利用에 큰 成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며 國家發展에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임을 믿는 바이다.